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노식래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 756

발의년월일: 2019년 6월 11일

발 의 자 : 노식래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김경영, 김재형, 김종무, 김태호,

박기재, 박순규, 서윤기, 양민규, 오중석, 이경선, 이동현, 이상훈, 이성배, 이영실, 임만균, 임종국, 정진철, 조상호, 한기영, 홍성룡

의원 (20명)

1. 제안이유

○ "사직2구역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"에서 서울 시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4조의3제4항제2호(현행 제14조제3항제5호)가 모법인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의 "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서 무효"라는 원심이 확정되었으 므로 대법원 판결 내용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○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서 역사·문화적 가치 보전을 삭제함(안 제14조제3항제5호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: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등) ① ~ ② (생략)	제14조(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"정비	3
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	
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
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~ 4. (생략)	 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	5. <삭제>
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 변지역의 역사·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	
④ ~ ⑩ (생략)	④ ~ ⑩ (현행과 같음)